

[사]대한산업안전협회 상임이사 공개모집

“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컨설팅기관”인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를 모십니다.

2022년 9월 19일

[사]대한산업안전협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1 대상 및 주요업무

- 대상 및 인원 : 상임이사 2명
- 임 기 : 2년(최초 임기 2년 경과 후, 한차례 2년 연임 가능)
- 주요직무
 - 산업안전교육분야 : 산업안전, 인증검사, 안전교육분야 사업조직의 소관업무 관장
 - 건설안전진단분야 : 건설안전, 시설안전, 안전진단분야 사업조직의 소관업무 관장

2 응모자격

포괄적 자격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○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사람 ○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○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					
필수요건	○ 「대한산업안전협회 정관」 제15조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					
구 체 적 요 건	학력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박사학위 소지자 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○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				
	자격증 기준	○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				
	경력 기준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30%;">공 무 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민 간 경 력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</td> </tr> </table>	공 무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	민 간 경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	공 무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				
민 간 경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					
실적 기준	○ 산업재해예방, 노동행정 발전, 산업안전보건 기술, 산업안전보건 교육홍보 등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,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사람					

- ※ 관련분야라 함은 노동 및 산업관련 행정, 경영, 조직인사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분야를 말함
- ※ 구체적 요건은 학력기준, 자격증기준, 경력기준 및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
- ※ 민간경력은 산하단체, 대학(전문대학 포함), 연구소, 민간기업(비상장기업 포함), 시민단체, 프리랜서 등 개인활동 경력을 말함

3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

○ 서류제출 : 2022. 9. 19.(월) ~ 2022. 9. 26.(월) 18:00까지(8일간)

○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※ 제출처 : (우)08289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

대한산업안전협회 경영지원본부 인사지원국

※ 방문접수는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, 2022. 9. 26.(월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※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2022. 9. 26.(월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4 응모방법 및 제출서류

○ 임원 후보자 지원서,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자기진단서 각 1부.

※ 상기 제출서류는 협회 홈페이지(www.safety.or.kr)에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작성

○ 증빙자료 각 1부.

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- 졸업증명서(대학 및 대학원) 또는 학위증(해당자에 한함)

- 지원서 등에 기재한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- 심사에 필요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

※ 해당 경력, 학력 또는 자격증 등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

※ 주요 직책별 공모분야(산업안전교육분야, 건설안전진단분야, 감사분야) 중 1개의 분야만 응모가 가능하며, 다른 분야에는 동시에 응모할 수 없음

5 심사방법

○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

- 제1차 : 서류심사(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)

- 제2차 : 면접심사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, 일시 및 장소 등 개별통지)

※ 심사에 대한 개인별 평가표 등은 공개하지 않음

※ 심사결과는 임원후보 추천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

6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7.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직무와 관련하여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1. 직무와 관련하여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 기타

-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 예정입니다.
- 응모자가 결원 예정 임원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.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따라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협회와 관련되어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.
- 우리 협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(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), 제18조(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) 및 시행령 제34조(취업승인)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에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(취업승인신청)하여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※ 취업승인심사 결과가 불승인일 경우 임원추천 및 임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[참고] '2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일정<10.28.(금) 개최>이 예정되어 있으니, 대상자는 <10.5.(수) 18시까지> 신청·접수를 완료하여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-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영지원본부 인사지원국(02-860-7164)로 문의 하시거나 협회 홈페이지(www.safety.or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